

의안번호	2215887
의 퇴 인	서영석의원
회 답 일	2026.3.3.
추 계 번호	26C0075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에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를 장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9,000만원(연평균 9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구급차등의 장비 (안 제47조)	490	-	-	-	-	490	9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(제1항) - 6의2. 제49조의2에 따른 구급차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·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	재량규정
2	안 제47조 (구급차등의 장비)	-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·보관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(제2항) - 1의2.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비(신설)	의무규정
3	안 제49조의2 (구급차위치정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(이하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시스템의 구축 등)	“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야 한다.(제1항) ○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.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전송의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×	○ 기 사업 명문화 - 보건복지부는 이미 구급차 위치정보 관리를 위한 ‘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(AiR)’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47조 (구급차등의 장비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49조의2 (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	×	○ 기 사업 명문화 - 보건복지부는 이미 구급차 위치정보 관리를 위한 ‘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(AiR)’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구급차 전수에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비(모뎀)을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
-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통신장비가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함

- 다만, 현재 민간 구급차의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없으므로 본 추계의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로 한정함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 2,450대의 통신장비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, 본 추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용 구급차 전수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총 비용을 계산함
 - 따라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 - 통신장비 단가는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준용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 전수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
-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총 구급차 수에 통신장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,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 첫 해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, 이후 통신장비의 유지·보수비용은 각 기관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 - (구급차 수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 2,450대
 -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2025년 12월 기준
 - (통신장비 단가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20만원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에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를 장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9,000만원(연평균 9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490	-	-	-	-	490	9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